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263500 기숙사 강제퇴관 공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며, 피해자는 ○○도 ○○시에 있는 ○○대학교 관광비즈니스영어과 2학년 학생으로 2017. 2.경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7. 3. 27. 기숙사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다 기숙사 사감에게 적발되었는데, 피진정인은 2017. 4. 1. 피해자의 기숙사 규정위반에 의

한 벌점이 누적되어 기준벌점 100점을 초과하였다며 강제퇴관 조치를 하였다. 기숙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를 하면서 심의회의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대학교는 피해자를 강제퇴관 조치하면서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초과(100점)을 하여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위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면서 “이진 너 미래야” 등의 댓글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 무렵 강제퇴관 조치를 받은 기숙사 입소생은 피해자뿐이라 이름이 익명으로 게재되더라도 일부 학생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위와 같이 강제퇴관 조치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기숙사 강제퇴관 조치는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2017. 3. 27. 00시 51분경 생활관 8층 비상계단에서 비상문을 임의 개방 후 흡연을 하였고, 다른 생활관생의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기숙사 사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행위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퇴관을 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기숙사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강제퇴관 조치사항을 게시함으로써, 기숙사 생활관생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숙사는 강의실과 한 건물에 있으며, 1 ~ 6층은 강의실이고 기숙사는 7 ~ 1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엘리베이터의 강제퇴관 조치사항을 보고 기숙사에 공실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기숙사 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기숙사 사감실 팀장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7. 3. 7. 기숙사 입소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생활관 운영지침’을 공지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입소생들에게 상·벌점이 부여되고, 벌점 100점 이상인 입소생은 강제퇴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 진정 피해자는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

나. 피해자는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라 2017. 3. 27. ‘호실 출입문 임의조작 행위’에 대한 벌점 50점 및 ‘생활관내 흡연’에 대한 벌점 50점,

2017. 3.중 무단외박 5회에 대한 벌점 50점 등으로 총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여 강제퇴관 조치를 받았으며, 2017. 3. 27. 생활관내 흡연 행위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숙사 강제퇴관 조치와 관련하여, 기숙사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2017. 4.경 약 1주일간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였다.

강제퇴관 공고

8층 이 ** 생활관생

벌점초과(100점)을 하여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2017.04.07.

사 감 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숙사 강제퇴관 조치를 하면서 심의회의를 거치는 등의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2017. 3. 7. 기숙사 입소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벌점 적용 사안 및 퇴관조치 등의 사안이 포함된 ‘생활관 운영지침’을 공지하였고, 피해자는 위 오

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기숙사 생활에 있어 상·별점 등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기숙사 강제퇴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흡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소명할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에서 피해자의 강제퇴관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인 심의회의 등을 거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관련 기본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평판이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진정에서 흡연 적발 등으로 별점이 누적된 결과 강제로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퇴관되었다는 정보는 스스로 밝히기 꺼리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여 위 강제퇴관 조치를 학생들에게 공개한 것은, 비록 익명처리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관 공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의 제한 행위가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흡연 등에 의한 강제퇴관 조치를 기숙사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고함으로서 추후 기숙사 입소생들의 생활규정 위반과 관련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라는 목적과, 1 ~ 6층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의 공고를 보고 기숙사의 공실을 인지하고 입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선 기숙사 입소생들의 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관련하여, 기숙사 입소생들은 위 공고문을 보면서 흡연 등에 대한 벌점제도의 존재 등을 상기하고,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벌점이 누적되면 기숙사에서 강제로 퇴관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함으로써,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그 수단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활관생”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 일부를 익명처리 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은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을 하여 교우관계를 통해 쉽게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2017. 4.이라는 공고 일자와 피해자 퇴관일 간의 시간적 접근성, 기숙사 8층이라는 공간적 접근성, 이**

이라는 성명 일부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면,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게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피해자는 이 공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 다른 학생들이 강제퇴관 공고문을 촬영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장난으로 서로 댓글을 주고 받았는데, 이러한 댓글에는 피해자가 기숙사 규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관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즉, 기숙사와 대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관 공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저하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진정인은 특정인의 강제퇴관을 공고하지 않아도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기숙사 입소생들에게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였다.

또한 1 ~ 6층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의 공고를 보고 기숙사의 공실을 인지하고 입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강제퇴관을 공고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록 익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